

항 소 장

사 건 번 호 서울행정법원 2000구26155

사 건 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유○○외 1518명(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의정부시 가능1동 363-1 법전빌딩 304호

손광운법률사무소

피 고(항소인) 경기도고양교육청교육장 인광기

소송수행자 김○○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18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2001. 6. 12. 피고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피고는 위 판결정본을 2001. 6. 21. 송달받았습니다.)

원 판 결 의 표 시

1. 피고가 2000. 7. 19. 원고들에게 한 별지 문서목록 2항 기재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 소 취 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송수행자지정서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항소장 부분 3통

2001. 7. 4.

피 고(항소인) 경기도 고양교육청교육장 (인)
위소송수행자 김 중 룰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번 호 서울고등법원 2001누10846

사 건 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피항소인) 유○○외 1518명(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의정부시 가능1동 363-1 법전빌딩 304호

손광운법률사무소

피 고(항소인) 경기도고양교육청교육장 인광기

소송수행자 김○○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18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의 이유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구대화동 장성마을, 성저마을 등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서 그 자녀들이 대부분 장성초등학교와 장촌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바, 원고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200미터 이내에 12개 숙박업소(모텔)가 영업중이거나 신축중이므로, 위 숙박업소 건축허가 경위를 알기 위하여 2000. 7. 13. 피고에 대하여 피고 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약칭함)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숙박시설)해제” 결정 관련 심의기록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00. 7. 19. 피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공개하였으나 ①정화위원회의 심의위원 명단, ②회의록상 참석자 명단, ③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의 발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비공개 정보 중 위원회의 심의위원 명단 및 회의록상의 참석자 명단에 관하여, ① 그 공개만으로는 특정 발언자의 개인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개인 식별에 따른 오해나 혼란을 초래한다거나 행정내부의 원만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방해할 염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② 그 명

단에 포함될 이름과 신분, 직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지는 하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누가 심의위원인지, 그리고 위원회 회의에 누가 참석하였는지 정도는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③ 그로 인하여 심의위원이나 회의 참석자 개인들이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심의위원 스스로가 위촉당시 공직 수행시(공무원으로서 심의위원이 되는 경우)에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④ 이 사건 위원회와 같은 합의제기관인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 합의과정 자체는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제의 구성원과 그 구성원의 합의 참석 여부는 공개되는 것이 보통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비공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으로 약칭함) 제7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회의록의 발언내용이 발언자가 누구인지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회의록상의 발언자 및 그 발언내용 부분과 심의위원 명단, 참석자 명단은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므로 발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부분만을 익명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의위원 명단과 참석자 명단은 공개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원회의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상의 참석자 명단을 익명처리한 것만으로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항소이유

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화위원회 회의록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당 학교와 심의신청 업소와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정도를 심의 기록한 것으로, 정화구역내 금지되는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장 의견서, 담당공무원의 출장결과 보고서, 정화위원의 현지답사 등을 토대로 정화위원회에서 금지행위의 해제 여부를 정화위원 상호간에 자유로운 토론·심사를 거쳐 의결되며, 정화위원회 구성원도 관계공무원 및 각 계 각층의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회의록은 위원회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사·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된 후라도 심사·결정절차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야 하며, 공개된다면 위원이나 회의 참석자는 회의록 공개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심리적 압박을 받아 위원회 심사·결정절

차에서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화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소정의 의사록정에 있는 것에 준하는 기록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중 특히 비공개된 특정 발언의 발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불온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를 해주어서는 아니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화위원 명단과 정화위원회 참석자 명단 자체는 원심판결과 같이 판단(회의록상의 발언자 및 그 발언내용 부분과 심의위원 명단, 참석자 명단은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므로 발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부분만을 익명처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의위원 명단과 참석자 명단은 공개하였어야 할 것이다)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판결 주문과는 달리 그 이유에서는 발언자 부분에 대하여는 익명처리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하여는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주문에 의하여 판결에 따른 재처분시 발언자 부분도 공개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사건 정보비공개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원심 판결은 법률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도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한 심의위원이나 회의 참석자 개인들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됨을 인정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위원회 구성원이 관계공무원 및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한 민간인 정화위원들의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의 정화위원회 민간인 위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정보공개는 또다른 소송을 야기할 염려가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간인 정화위원들은 정신적·심리적 부담으로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 정화위원회의 구성 운영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률의 규정을 잘못 해석, 적용한 것으로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유사 판례와의 관련성

이 사건 회의록과 성격은 조금 다르나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징계재심회의록 관련 정보공개사건에서도 원고가 패소했던 판례(서울고등법원 19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와 결론을 달리 하고 있는 원심 판결은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 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판례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마땅히 파기되어야 하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 8. .

피 고 경기도고양교육청교육장
위피고 소송수행자 김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